

###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 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8
----------	-----

제출연월일 : 1999. 7.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령이 개정(법개정 1999. 1. 29, 법률 제 5708호, 영개정 1999. 3. 31, 대통령령 제16213호)됨에 따라
- 법령개정 사항과 기타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주요골자

- 의료원의 정관변경 인가권을 행정자치부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
- 의료원의 원장후보 추천권을 이사회에서 지방공사의 장 후보추천위원회로 변경
- 감사 임면권을 의료원장에서 도지사로 변경하고, 감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의료원장의 임기보장 규정 신설
- 의료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에 있어 도지사 승인사항을 사후보고로 변경

근거법령

-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 의료법 제35조

참고자료

1. 개정조례안 1부.
2. 관련법규 발췌 1부.

※ 입법예고('99. 5. 28 ~ 6. 20)결과 특기사항 없음

##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 조례개정조례(안)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 및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주민의 보건위생에 필요한 의료의 제공 및 운영을 담당하기 위한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주민의 진료와 질병 등에 대한 임상연구, 의료요원의 훈련을 통하여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의료 발전과 주민복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의료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의료원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분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청주의료원의 자본금은 3,254,756,737원으로, 충주의료원의 자본금은 1,717,899,642원으로 하고 도지사가 전액 출자한다.

②제1항의 자본금 납입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제1항의 출자는 현금이외에 공유의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현물 출자할 수 있다.

제5조(정관) ①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의 임상연구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 10. 기금에 관한 사항
- 11.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 12. 공고에 관한 사항
- 1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14. 해산에 관한 사항

②의료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등기) 의료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 제 2 장 임원과 직원

제7조(임원) 의료원에는 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이사 약 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2인 이내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임면) ①원장은 도지사가 임면한다. 다만, 임명의 경우에는 충청북도 지방공사의 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면한다.

③감사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면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원장·이사·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법 제7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중대한 과오가 있거나 폐질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임원의 직무) ①원장은 의료원을 대표하며 의료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의료원의 이익과 원장 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 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의료원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부의 안전을 심의 의결하며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원의 업무를 관장한다.

④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원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2조(직원의 임면)** ①의료원에 필요한 의료요원 및 직원을 둔다.

②의료요원 및 직원의 임면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13조(임원 및 직원의 겸직제한)** 의료원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도지사의, 직원은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이사회)** ①의료원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의료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원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의 이사회는 의료원 업무의 지도 감독 부서의 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⑤이사회는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하부조직)** ①원장 밑에는 진료부와 관리부를 둔다. 다만, 전문의의 수련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할 경우 교육연구부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부에는 부장 각 1인을 두고 그 업무분장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진료부장은 원장이 지정하는 진료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 제 3 장 사 업

제16조(사업) 의료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진료사업
2. 전염병 예방등 공공의 보건의료사업
3. 질병에 대한 임상연구
4.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5. 주민의 장의편익 증진을 위한 장의사업
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17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의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 계약에 의한다.

②의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하여 정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진료제공의 범위) 의료원의 진료제공의 지역범위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 제 4 장 재무회계

제19조(사업연도) 의료원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0조(계리의 원칙) ①의료원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의료원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21조(예산 및 결산) ①원장은 매 사업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단,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이사회 개최 30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원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도지사는 보고된 예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④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⑤의료원의 매 사업 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 연도 종료 후 3월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결산 완료 후 결산서와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손익금의 처리) ①의료원은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1. 이월결손금의 보전
- 2. 이익준비금의 적립
-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②의료원은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1.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 2.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23조(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①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의료원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기금조성 등) ①원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의료원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의료원의 기본시설·설비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공공진료에 따른 의업수입 등 의료원의 경상수입으로 의료원의 시설 설비와 차관의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수 없거나 운영비에 부족이 있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 또는 대여할 수 있다.

**제25조(사채의 발행)** ①의료원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채(국내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사채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26조(차관)** ①의료원은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외국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27조(차입)** ①의료원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장기 차입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의료원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 5 장 감 독

**제28조(감독)** ①도지사는 의료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경영평가)** ①도지사는 의료원이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경영될 수 있도록 매년 1회이상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경영평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시행할 수 있다.

**제30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의료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제 6 장 보 칙

제31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원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의료원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원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2조(의료수가) 의료원이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수가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정한다.

제33조(상법의 준용) 의료원에 관하여는 법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허가등) 의료원 설립당시에 도립병원사업특별회계 소관으로 관리하던 공유재산 및 물품은 의료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때까지 의료원에 무상사용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③(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지방공사의료원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관계법령 발췌

### 【의료법】

제35조(의료기관의 명칭) ①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명칭표시는 병원으로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명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정관) ③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8조(임원) ①공사의 사장·부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장을 임명할 때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④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9조(임기 및 직무) ①사장·부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예산) ①공사의 사장은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당해 사업년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공사의 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결산)** ①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종료후 3월내에 완료 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5조(상법의 준용)** 공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5조의2(공무원의 파견·겸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사장 및 감사의 임면)** ①사장은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외에는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7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중대한 과오가 있거나 폐질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공사의 사장이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작성한다.

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이사회개최 30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